

제 509 호

1975. 7.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전 집 : 문화공보실장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주 제	
제 960 호 : 서울특별시 혼·분식 실천강화협의회 조례	3
제 961 호 :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4
제 962 호 : 수도행정자문위원회조례증 개정조례	6
제 963 호 : 서울특별시 문화상조례	7
○ 규 칙	
제 1483 호 :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시행규칙증개정규칙	9
○ 운 행	
제 410 호 : 서울특별시소방본부 위임전결규정증개정규정	10
제 411 호 : 서울특별시소방서 위임전결규정증개정규정	20
제 412 호 : 서울특별시고용원 인사관리규정증개정규정	25
제 413 호 :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증 개정규정	25
○ 고 시	
제 98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폐지) 및 지적승인	28
제 100 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제 103 호 : 종로구청사 이전에 따른 위치고지	29
○ 사 명	3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일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962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혼·분식 실천 강화협의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60 호

서울특별시 혼·분식
실천 강화 협의회조례

제 1 조(목적)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양곡 소비절약을 위한 혼·분식의 실천 및 식생활 개선사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혼·분식 실천 강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조정한다.

1. 양곡의 소비절약 혼·분식의 실천 및 식생활 개선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협의
2. 협의회 기본 계획 주체에 관한 제동·선전 및 각종 행사

3. 전 2호에 관련된 자금 기관의 신원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조정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

제 3 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 1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선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단체 및 여성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다만 제 11호 내지 제 1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산업국장
2. 서울특별시 보전사외국장
3.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4. 서울특별시 공보실장
5.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6.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장
7. 서울지방 검찰청 부장검사
8. 서울지방 국세청 간세국장
9.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지소장
10. 농산물검사소 서울지소장
11. 여성단체 대표 2명
12. 육박업 협회 대표 1명
13. 유통업 협회 대표 1명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掌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유고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 5 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조 (의결사항의 존중과 협조)

①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정파장이 되고 서기는 석생활 개선 계장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에 종사한다.

제 8 조 (운영규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 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7월 5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961 호

서울특별시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 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로 의화회복을 축진하고자 지방재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업소에서 유흥 음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 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불균일 과세대상)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 관

광객(외국인 선원과 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광사업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업소(지방세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장소 및 제2종 장소에 한하여 한국식 표정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여행 알선업체의 알선을 받아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자
2. 개별적으로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외국인은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자

제3조(적용세율) 제2조의 불균일 과세에 대한 유흥음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조(대상자 확인등) ① 관광업소 경영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방세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의 영수증은 지방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을 준용한다.

② 관광업소 경영자는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에 당해 외국인의 여권번호, 국적, 성명 및 입국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숙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사무는 관광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6조(경감신고) ① 관광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알선업체의 알선확인서, 수수로 지불 영수증사본, 외국인 관광객에게 교부한 영수증 정본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유흥음식세의 경감내용을 매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증명을 대조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발견한 때에는 자체없이 지방세법 제1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
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수도행정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1975년 7월 5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962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19
호 및 20호를 신설한다.

제3조 (위원회) 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9. 하수분과위원회

20. 문화, 공보분과위원회

제4조 및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8인이상 12인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분과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
교수 및 언론인 중에서 학식과 덕
망있는 인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장이 자고가 있을 때에는 전조 각호
에 정한 분과위원장 순위로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동) ①위원회(분과위원회)
는 매분기마다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분과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분과위원장)의 요구에 의
하여 개최한다.

③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분과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위원회 다음에 "(분과위원회)"
를 삽입한다.

제7조 (1) 항중 위원회 다음에 "(분
과위원회)"를 삽입한다.

제8조 위원회 다음에 "(분과위원회)"
를 위원 다음에 "(분과위원)"
을 각각 삽입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조례 등)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 조례(서울특별
시조례 제681호)는 이를 폐지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문화상조비를 아래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7월 5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963 호

서울특별시문화상조비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서울특별시문화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상의 수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제 3조(시상시기) 상은 연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시장이 바로 정한다.

제 4조(상의 종류) ① 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부문

2. 예술부문

3. 교육부문

4. 업종부문

5. 천연부문

6. 체육부문

② 상은 전향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한다.

제 5조(수상자의 요건) ① 서울특별시민으로서 제 1 항의 각 부문에서 공적이 특별하며 또한 학문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에는 수상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수인에게 시상한다.

② 전향의 공적은 시상 당해년도 6월 30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의 만 5년간을 마상기간으로 한다.

③ 제 9조에 의한 실사위원회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6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 4조 제 1 항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또는 대학총장, 대학원장, 대학장이 추천한다.

제 7조(수상자 결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p>제 9 조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한다.</p>	<p>자 선정은 위원회 제1위원장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제 8 조 (상장 등) ①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p>	<p>③ 1차투표에서 전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전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투표에서 다수득표자 2인을 수상후보자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p>
<p>제 9 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수상 후보자를 심사 선정하게 하기 위하여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④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p>
<p>제 10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내지 9인이내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흐선하고 위원은 제 4 조 제 1 항에 규정된 각 부문별 전문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 12 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실의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위원회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그 해 상의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해임된다.</p>	<p>제 13 조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 11 조 (수상후보자 선정) ① 위원회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p>	<p>제 1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칙으로 정한다.</p>
<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규 칙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1975년 7월 5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83 호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시행
규칙 중 개정규칙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위원회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관, 서기는 기
획관리제장이 된다.

제 3조 중 「(분과위원회별 수관부서)
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
수관부서)」로 하고 1, 2, 9, 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14호를
신설한다.

1. 위원회는 기획관리관이 수관하
고 각 분과위원회는 주관국장이
운영한다.

2. 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 분과위
원회를 주관한다.

9. 건설국장은 다음 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가. 건설분과위원회

나. 하수분과위원회

다. 안전대책분과위원회

11. 지하철 본부장은 지하철 건설
분과위원회를 주관한다.

14. 문화홍보실장은 문화홍보분과위
원회를 주관한다.

제 6조 ②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조 ② 간사는 도시행정과장, 서
기는 관리제장이 된다.

제 21조 ②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1조 ②간사는 차수과장, 서기는
차수제장이 된다.

제 22조 및 제 23조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 22조(하수분과위원회) ① 하수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하수도시설계량에 관한 사항

31-10 제 509 호

시

보

1975.7.5

<p>3.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p> <p>4. 내수침수(유수지 시설) 대책에 관한 사항</p> <p>5. 하수도 사용료 사정에 관한 조사 연구</p> <p>6. 기타 하수도에 따른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p> <p>② 간사는 하수과장, 서기는 하수행정계장이 된다.</p> <p>제 23조 (문화공보분과위원회) ① 문화공보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1. 문화공보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p> <p>2.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p> <p>3. 핫토문화개발과 보호에 관한 사항</p> <p>4. 시정홍보, 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사항</p> <p>5. 종교 및 문화예술단체와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p> <p>6. 기타 문화공보에 관한 사항</p> <p>② 간사는 문화공보실장, 서기는 문화계장이 된다.</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 ·</p> <p>훈령</p> <p>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위임 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p> <p>1975년 7월 5일</p> <p>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p> <p>◎ 서울특별시 훈령 제 410호</p> <p>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위임 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p> <p>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위임 전결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위임전결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부 칙</p> <p>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위 임 건 결 구 분 표

기능별 일련 번호	전 결 사 항	계 정			비 고
		계장	과장	분부장	
공통 1	소방업무에 관한 중요 계획 및 방침			○	
2	중요 행사 계획			○	
3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요자체사고			○	
4	중요간행물 발간 및 대외 발표			○	
5	직원 근태				
	가. 계장급 이상			○	
	나. 소방경 위급 이하			○	
6	시간외 근무명령				
	가. 과장급			○	
	나. 계장급			○	
	다. 소방경 위 이하			○	
7	소속 소방경 위이하 직원의 사무분장			○	
8	소속직원의 표창 추천			○	
9	소관사무 실사분석			○	
10	소관사무 계획수립			○	
11	자료조사 및 정기보고			○	
12	수령문서 처리			○	
13	수리하지 않을 문서의 반려			○	
14	제증명 및 확인증 발급			○	
15	출장 복명서			○	
16	각종 근무일지 처리			○	
17	소관과 민원사무처리부 경열			○	
18	민원처리 결과 통보			○	

1967

31-12 제 509 호

시 보

1975.7.5

기능별 번호	일련 번호	전 결 사 항	개 정			비 고
			제 장	파 장	본 부 장	
공 통	19	출석요구서 발급		○		
	20	직원의 출 허가			○	
	21	가. 파장 나. 계장 다. 소방경위급 이하 소관업무에 관한 경 미한 민원조사		○		
서무계	1	기본운영계획				
	2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3	나. 중요업무계획			○	
	4	다. 운영계획수정			○	
	5	라. 실사분석		○		
	6	예규,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의 제정요구 및 개폐설사요구			○	
	7	법령집 회시		○		
	8	법령집 배포 및 보관관리	○			
	9	관할구역 조정			○	
	10	인사처리 지침			○	
	11	임용			○	
	12	가. 소방경감(소방경)이하의 승진임용 및 전직			○	
	13	나. 소방이하의 신규임용(소방원 공채포함)			○	
	14	다. 조건부 소방관 정규 임용		○		
	15	라. 고용원 임용			○	
	16	마. 회계관계 공무원 임용			○	
	17	파. 소방경정(서장이 아닌 소방경)이하의 과서장 서내 전보			○	

기능별 번호	일련 번호	전 결 사 항	계 정			비 고
			계 장	과 장	부 장	
서무계	9	경기승합발령 (간부 , 비간부 , 고용원포함)		○		
	10	상법 상계 발령		○		
	11	소방경감 (소방경) 이하의 휴직 , 복직 , 직위 해제 , 직위부여 , 면직 , 파면			○	
	12	승진임용후보자 명부 확정 (조정포함)			○	
	13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 작성				
	14	단기이동 승인			○	
	·	가. 간부			○	
		나. 비간부			○	
	15	인사발령 통지			○	
	16	소방관 승진시험 요구			○	
	17	소방원 품개체용시험 요구			○	
	18	조직및 정원 관리			○	
	19	소방경감 (소방경) 이하 추수			○	
	20	직원순직 , 사망 , 공상자 발생보고			○	
	21	명예소방관 위촉			○	
	22	비밀취급인가			○	
	23	공무원증 , 발급 및 홍장대여 , 회수	○			
	24	공직심사위원회 운영 (보안심사위원회포함)		○		
	25	인사기록유지 관리	○			
	26	직원복무규율			○	
	·	가. 방침결정			○	
		나. 세부설시계획 및 지도			○	
	27	감독순시			○	
		가. 순시에 따른 기본방침			○	
		나. 근무지정 및 결과처리			○	

31-14 채 509 호 시 보 1975.7.5

기능별 번호	일련 번호	전 결 사 항	개 정			비 고
			제장	파장	본부장	
서무계	28	숙직근무 지정		O		
	29	건강관리		O		
	30	직장저축사무		O		
	31	연금, 경무협회비의 신청 및 불입	O			
	32	요양승인		O		
	33	순직, 사망자 조위금 및 정년퇴임자 전년 금 각출		O		
	34	년금카드 및 건강카드 처리	O			
	35	소방회보 발간		O		
	36	교육훈련 종합계획			O	
	37	월중직장훈련계획		O		
	38	교육훈련평가 및 지도감독		O		
	39	교육입교자 지정			O	
		가. 간부			O	
		나. 비 간부		O		
	40	판인판수 및 문서통제	O			
	41	보존기간 경과문서 처리		O		
	42	소방관 관외여행 허가			O	
		가. 간부			O	
		나. 비 간부		O		
	43	도서 관리	O			
	44	자체보안관리		O		
	45	의소대원 등 재해보상 지급결정			O	
	46	경찰예식, 의전행사 회의			O	
		가. 중요사항			O	
		나. 경 미사항			O	

제 509 호

시 보

1975.7.5 31-15

기능별 번호	일련 번호	전 전 사 항	계 정			비 고
			제장	과장	본부장	
서무계	47	정계집행 가. 간부 나. 비간부 48 사업경찰관리 지명서 체정		○	○	
감찰계	1	감찰업무처리 지침 가. 중요지침 나. 일반지침		○	○	
	2	정계위원회 운영 가. 소방경위(소방위) 이상의 정계요구 나. 소방사이하 정계요구 및 정계지시 다. 각서 정계업무 지도감독 라. 경감이하 정계집행		○	○	
	3	비위관련민원(진정) 및 청보조사처리 가. 청와대 하명사항 나. 경위이상		○	○	
	4	다. 소방사이하 소방행정감사		○	○	
	5	선 행자추천 및 계고대상자처리 가. 선 행자추천		○	○	
	6	나. 경위이상 장려장 및 계고장 다. 소방사이하 장려장 및 계고장 감찰특명 사항 조사보고		○	○	
	7	감사원 감사처분요구		○	○	
	8	소송사건 경위이상 소방사이하		○	○	

1969

31-16 제 509 호 시 보 1975.7.5

기능별 번호	일련 번호	전 결 사 항	개정			비고
			제장	과장	본부장	
감찰계	9	타기관 출두 및 소환 경위이상 소방사이하			○	
	10	감찰정보비청구 및 집행		○		
	11	소청사건		○		
	12	일반감찰사건		○		
장비계	1	세출예산의 편성자료			○	
	2	예산배정요구		○		
	3	경쟁입찰 가. 50만원이상			○	
	4	나. 50만원 미만		○		
	5	결산서 제출			○	
	6	예산증감 조치			○	
	7	예산집행			○	
	8	예산요구서 제출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보고서		○		
	9	급대여품 출납			○	
	10	비품출납 및 보관전환			○	
	11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계산서		○		
	12	과오납정리			○	
	13	소모품 출납			○	
	14	소방차량 관리전환			○	
	15	일정통통사항	○			
방호계	1	경방체화 및 화재진압			○	
	2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		

제 509 호 시 보 1975.7.5 31-17

기능별 번호	일련 번호	전 결 사 항	계 정		
			제장	과장	본부장
방호계	3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
	4	위험물제조소등 단속	○		○
	5	위험물취급주임 면허시험 및 면허증교부			○
	6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 제교부 및 기재 사항 변경	○		
	7	위험물취급주임교양		○	
	8	위험물취급주임 적성검사		○	
	9	소방수리 유지관리		○	○
	10	위험물제조소등의 행정처분에 관한사항			○
	11	위험물취급주임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12	위험물제조소등 수입시험에 관한 사항	○		
	13	" " 원공검사에 관한 사항	○		
	14	" " 양수신고에 관한 사항	○		
	15	" "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		
	16	위험물제조소등의 감독에 관한 사항	○		
	17	산화예방에 관한 사항		○	
	18	위험물제조소등 변경 허가	○		
조사계	1	소방법위반 사법 인지보고			○
	2	조사전보 비청구 및 접행		○	
	3	소방시설 및 위험물 감식 감정		○	
	4	민원 (고소, 고발, 진정) 사건 송치	○		
	5	소방사법조사 중간보고		○	
	6	소방법 위반사건조사 결과보고			○
	7	소방법 위반사건 추종서 처리			○
	8	외국인 소방사법조사			○

1970

31-18 제 509 호

시 보

1975.7.5

기능별 번호	일련 번호	전 결 사 항	개정			비고
			계장	과장	본부장	
조사계	9	소재수사 자체		○		
	10	소방사법처리업무 지도		○		
	11	소방사법 철보처리			○	
	12	사건처리결과 (보고) 통지		○		
	13	지문원자 송부처리		○		
	14	소방사법에 관한 부제정리	○			
	15	부명사항 조사보고			○	
	16	화재 방어 경로회			○	
	17	중요화재사건			○	
	18	경미한 화재사건		○		
지령실	1	무선통신망 호제정 및 개정			○	
	2	통신장비 관리		○		
	3	통신기기의 시설이설 및 철거			○	
	4	통신시설의 보수		○		
	5	통신요원지도 감독		○		
지도계	1	화재경계지구 지정			○	
	2	소방검사에 관한사항		○		
	3	소방시설 축진사항		○		
	4	소방대 상물 개수명령			○	
	5	건축허가 및 준공등의 업무		○		
	6	방화순찰		○		
	7	소방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승인			○	
	8	소방시설 시공신고서 처리에 관한사항		○		

기능별 일련 번호	전 결 사 항	계 정			비 고
		계장	과장	부부장	
홍보계	1 소방홍보 계획			○	
	2 블조심 제동지도		○		
	3 홍보간행물			○	
	4 소방설비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 경정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사항			○	
	5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소 설치허가 에 관한사항			○	
	6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소 시설변경 또는 폐업 및 양수신고에 관한사항	○			
	7 소방설비기사 2급자격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	
	8 소방설비기사 2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			
	9 소방설비기사 2급자격적성 검사에 관한 사항	○			
	10 각종 홍보용 사진촬영 및 인화	○			
훈련계	1 소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소방훈련지도 견열에 관한 사항	○			
	3 민방용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	
	4 방화관리자 지도에 관한 사항	○			
	5 방화관리자 강습 및 교양			○	
	6 인명구조 및 훈련			○	

31-20 제 509 호

시 보

1975.7.5.

서울특별시 소방서 위임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75년 7월 5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② 서울특별시 훈령제 411호

서울특별시 소방서 위임
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소방서 위임전결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임전결구분표를 벌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구분표

기능별 번호	일련 번호	전 결 사 항	개 정			비고
			제	장	과	
공통 사항	1	소방행정에 관한 중요 계획수립 및 집행			<input type="radio"/>	
	2	소관사무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	<input type="radio"/>			
	3	직원 근태 가. 간부 및 파출소장			<input type="radio"/>	
		나. 소장이 아닌 비간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의출 허가 가. 과장급			<input type="radio"/>	
		나. 계장급이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시간외 근무명령 가. 과장급			<input type="radio"/>	
		나. 계장급 이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파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과장이 아닌 경감이하 관리여행			<input type="radio"/>	

기능별 일련 번호	전 결 사 할	개정		
		계장	파장	서장
공통	8 고용원 및 사환임·해던			○
사함	9 소방사이하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		
	10 과내 계단속 및 처리	○		
	11 소관업무에 대한 세부설천계획수립 및 집행	○		
	12 경미한 진정서 및 첨보처리	○		
	13 소관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		
	14 출석요구서 발급	○		
	15 민원서류의 처리결과 회신 및 보완지연통지	○		
	16 수리하지 아니할 문서의 발송	○		
	17 제증명발급과 기재사항변경 및 재교부	○		
	18 각종 근무일자의 처리확인	○		
	19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수집	○		
	20 경미한 정례보고와 통계자료 제출	○		
	21 각종 대장 및 명부정리	○		
	22 인쇄물 배부	○		
	23 잡서류 처리	○		
소방과	1 계장이하 직원의 서내전보			○
	2 교육 차출			
	가. 간부및 파출소장			○
	나. 파출소장이 아닌 비간부	○		
	3 정계집행			
	가. 간부및 파출소장			○
	나. 파출소장이 아닌 비간부	○		
	4 상벌상계 발령	○		

31-22 제 509 호 시 보

1975.7.5

기능별 일련 번호	전 결 사 항	개 정			비 고
		계장	과장	서장	
소방과 5	숙직근무 지정		○		
6	감독순시 지정			○	
7	순시 결과보고서			○	
8	제고, 장려장 발급		○		
9	인사기록, 강찰카드등의 기록확인		○		
10	판인판수 및 문서통제		○		
11	보안업무				
	가. 비밀취급인가			○	
	나. 인가증 발급 및 회수처리	○			
	다. 서약집행		○		
	라. 직원 및 고용인등의 신원 및 지문조회		○		
	마. 비밀재분류 검토		○		
	바. 비밀문서 통제		○		
	사. 서내 보호구역의 설정			○	
	아. 자체보안관리		○		
	자. 방화 관리		○		
	차. 자체경비		○		
12	직원검강 관리		○		
13	보존기간 경과문서 폐기처분		○		
14	직장거축사무		○		
15	직장훈련				
	가. 연중계획			○	
	나. 분기 및 월별계획		○		
	다. 간부급 평가		○		
	라. 비간부급 평가		○		
	마. 직장훈련 교안		○		

제 509 호 시 보

1975.7.5 31-23

기능별 번호	일련 번호	전 결 사 항	과 정			비 고
			제 장	과 장	서 장	
소방과	16	공무원증 발급 및 흥장 대여회수	○			
	17	승급발령 (소방경 강아이하)		○		○
	18	법령질의 및 회시		○		
	19	우표 수불처리	○	○		
	20	1일 민원업무처리 확인		○		
	21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			
	22	전사상자 확인		○		
	23	예산집행		○		
	24	입찰 및 등록		○		
	25	유류출납		○		
	26	비품 및 금대여품 출납		○		
	27	장비 관리 (차량, 통신)		○		
	28	무기 관리		○		
	29	과오 날정리		○		
	30	봉급 및 수당소요액 보고		○		
방호과	1	외소 대장의 임·해면 계정			○	
	2	대장이 아닌 일반대원의 임·해면			○	
	3	외소 대원의 교양 및 훈련			○	
	4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저장수량 10배 미만) 단, 제조소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제외			○	
	5	자체경방제화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	
	6	위험물 취급주임 교양		○		
	7	방화 관리자 간접지도		○		
	8	소방용 수리시설 유지 관리		○		
	9	위험물 제조소등의 단속에 관한 사항		○		
	10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 관한 사항		○		

1973

31-24 제509호

시 보

1975.7.5

기능별 번호	일련 번호	전 절 사 항	개 정			비 고
			제장	파장	사장	
방호과	11	위험물 소량취급소 신고	○			
	12	소방점사에 관한 사항	○			
	13	위험물 임시저장 신고	○			
	14	화재 미달 처리	○			
	15	위험물 취급주임 선·해임신고	○			
	16	위험물 취급소 저장소 용도폐지신고	○			
	17	위험물취급소, 저장소 환경검사 신청	○			○
	18	수압검사 신청	○			
	19	위험물 제조소등 양수신고	○			
	20	위험물 운반신고	○			
	21	가스취급업소의 개, 폐업신고	○			
	22	분화신고	○			
	23	방화사상 계몽선전			○	
	24	화재경계지구 승인 계청			○	
	25	방화전축지도		○		
	26	건축허가 준공통의		○		
	27	소방용 기계기구 및 약품판매단속에 관한사항			○	
	28	소방용 기계기구판매소의 허가 및 행정처분			○	
	29	소방용 기계기구판매업소 시설변경 또는 폐업 및 양수신고에 관한 사항			○	
	30	불조심 계몽지도			○	
	31	각종홍보활동 계획 및 자료작성		○		
	32	대민 홍보자료 수집		○		
	33	소방점사 및 소방시설 축진에 관한 사항		○		
	34	소방시설 외비증명 발급		○		
	35	소방훈련지도			○	
	36	방공 소방의날 행사			○	
	37	방화관리자 지도교양		○		
	38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		○		

서울특별시 고용원 인사관리 규정 중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율과 같이 개정한다.
1975년 7월 5일	별표 1 고용원 (임시 직포함) 채용자격기 준 표준 기계공 상수도분야 자격구 분한 제 1호중 "(기계과)" 를 삭제 하고 각종판에 상수도분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조절수 자격구분란 중 제 1호를 삭제하고 제 2호 및 제 3호 를 각각 제 1호 및 제 2호로 한다.
서울특별시 장·구자 출 [인]	
⑤ 서울특별시 훈령 제 412 호 서울특별시 고용원 인사 관리 규정 중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고용원 인사관리 규정 중 개정	

직 종	분 야	자 격 구 分
직 공	상수도분야	1. 중학교 이상의 졸업자 2. 국민학교 졸업이상의 자로서 당해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자

부 칙	이 개정 한다.
이 규정은 1975년 7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위임전결구분 3. 기획관리관 나. 예산담당관 예산 1, 2체 공통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 중개정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 예산집행란 중 "300만원" 을 "500만원" 으로, "100만원" 을 "200만원" 으로 "50만원" 을 "100 만원" 으로 "30만원" 을 "50만원" 으로 하고, 예산배정란 중 "300만원" 을 각각 "500만원" 으로, "50만원" 을 각각 "200만원" 으로 하며.
1975년 7월 5일	4. 예산전용란 중 2. 우용제결 분 예산 배정 결제권자를 "과장"
서울특별시시장 구자 출 [인]	
⑥ 서울특별시 훈령 제 413 호 서울특별시위임전결 규정 중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위임전결 규정 중 다음과 같	

31-26 제 509 호

시 보

1975.7.5

면밀에서 '제장' 전결로 한다. 별표 위임전결구분 7. 재무국 다. 회	제과 심사계관을 다음과 같이하고 지출계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기별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결재권자					협조처		
			담당자	장	계	과	국	부	시	
심사계	1. 합의	1. 1전당 500만원 이상공 사 집행합의 2. 1전당 200만원 이상물 품 제조합의 3. 1전당 100만원 이상물 건 대체, 노력의 통급, 물건임대차합의 4. 1전당 50만원 이상보상 금 및 제수수료 기타등의 합의					○			
지출계	1. 지출계산 2. 자금운영 3. 전도자금	1. 세출현제표 2. 결산보고서 1. 타회계 전출금 지급 2. 화폐간 자금전용 3. 자금배정 1. 전도자금 정산확인					○	○		

별표 위임전결구분 12. 도시계획국 라. 건축과 3. 준공검사팀중 제 3호
를 제 4호로 하고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별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결재권자					협조처		
			담당자	장	계	과	국	부	시	
건축계	3. 준공검사	3. 연면적 500평이하		○						

별표 위임전결구분 13. 주택국 나. 단속과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 별	단 위 업	세부사업명	절제권자				협조처
			단 체 당 자 장 장	제 국 부 서 장 장	부 서 장 장	시 장 장	
지도계	1. 신발생무 허가전물방 지 및 철거	1. 무허가전물신발생 방지 계획 및 지도계통 2. 항축도의 다목적 활용계획 및 보급		O			
항축계	1. 항공사진 촬영 및 관측	1. 항공사진 활용에 따른 지 상물체 판독 2. 항공촬영비 행승인 및 연기 승인 협조 3. 항공사진 대여 및 수불관리 4. 항축도 및 약식현황도 수 불관리		O			관제기관
단축계	1. 신발생무 허가전물단축	1. 신발생무허가전물 철거지시 2. 신발생무허가전물 신고처리 3. 점검순찰 반 운영 4. 항축에 의한 신발생무허 가 전물 철거지시 및 종 결 처리		O	O	O	
부 지							
이 규정은 197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98호

서울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폐지)및 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도로를 다음과같이
일부변경(폐지)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호(73
4.4)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
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

1975. 7. 4.

서울특별시장

가. 로선조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2		8m	80m	천호동 225-6	천호동 229-7	
변경	"	"	4-8	226	"	"	천호동 229-1	
기정	소로	3		6	116	수유동 401-1	수유동 400-17	
"	"	"		"	"	"	"	지적분활선및 현 황도로에맞출
기정	"	2		8	100	석관동 43-44	석관동 43-8	
폐지	"	2		"		"	"	현황도로로 대체 폐지

◎서울특별시고시제 10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465호(71.8.6)로
시설점정고시된 도시계획공원중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호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출장소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7. 7.

서울특별시장

지적승인조사 : 별첨조사참조
지적승인도면 : 별첨도면 표시와같음
도면은 서울시청
과 관할구청및 출장소에보관.

지적승인조서

단위 : m²

공원명	위치	지적승인면적	비고
역삼공원	성동구 역삼동, 삼성동	36,784	
학동공원	성동구 학동, 논현동	29,947	
봉은공원	성동구 청담동	59,302	
신사공원	성동구 신사, 논현동	29,947	
봉천공원	관악구 신림, 봉천동	124,492	
우민공원	성동구 우민동	63,750	
서초공원	성동구 방배, 서초, 반포	452,520	
내곡공원	성동구 내곡동	817,018	남부묘지공원 명장변경
고덕공원	성동구 고덕동	112,398	
봉화공원	동대문구 신내, 중화, 상봉	396,560	
화곡공원	영등포구 화곡동	21,500	
시흥공원	영등포구 시흥동	86,748	
봉산공원	신도면 향동 용두리	1,145,514	
봉천도로공원	관악구 봉천, 사당동	239,750	
국립종합경기장	성동구 동촌동, 도금동	2,865,550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3 호

종로구청사이전에 따른위치고시

일찬 대민봉사 행정의 구현과 시민
편의를 위하여 분산된 청사를 통합,
아래와같이 이전하게되었기 이를고시 한다.

서울특별시 장구자준

1975년 7월 일

○ 이전청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10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9-2 (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동 4가 1 (별관)

○ 이전청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수송국민학교내)

○ 이전년월일 : 1975년 7월 9일

사 명	관 악 구 지방행정 서 기 보	한 중 수
◎ 1975. 7. 3 서대문병원 서무과장(지방 행정사무관) 김상의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와 2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 를 해제함. 관악구보건소 지방의무 소장 기정 박인설 원에 위하여 그직을 면함.	중 구 지방행정 서기보 성동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서기보 도시계획과파견(75.7.5- 75.10.5)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행정 서기보 인문기 업무파견(75.7.5-75.10.5) 근무를 명함.	권 주 철 김형우 인문기 75.10.5)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이명수 업무파견(75.7.5-75.10.5) 근무를 명함.
◎ 1975. 7. 4 관 악 구 주 지방행정 사 신석균 남부녹지사업소근무를 명함. 남부녹지 지방행정 사업소 주 사 김병강 양묘장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서기 유진봉 성북구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행정 서기 이상복 중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우정순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용찬 중구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서기 이원점 양묘장파견 근무해제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행정 서기 안병조 연로파과전근무해제를 명함. 관 악 구 청소과장(지방 행정사무관) 김한경 서대문병원 서무과장에 보함. 관악구보건소 만원공사신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서원 관악구보건소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이명수 75.10.5)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이원점 이원점 안병조 75.10.5) 근무를 명함. 관악구보건소 만원공사신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서원 관악구보건소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제 509 호

시 보

1975.7.5 31-31

◎ 1975. 7. 5

관할을수국 서기 관 김원경
윤수 2과 주사보
국가공무원법제 78조제 1항제 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보건사회국 의무기정
의약과장 시보 조승현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용산구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오도석
전설행정과파전 (75.7.7-75.
10.7)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세무 1과 주사보 조봉원
전설행정과파전 (75.7.7-
75.10.7) 근무를 명함.

◎ 1975. 7. 7

은명출장소 지방토목 기원보서로 이종출
영등출장소파전 (75.7.7-75.10.31
까지)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건축 주술영
시립운동장 파전근무 (75.7.15-
75.10.15까지) 를 명함.

◎ 1975. 7. 8

종로구 토목과장 토목기과 김진우
마포구 근무를 명함.
중구토목과장 토목기과 최영수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토목과장 토목기과 김경실
종로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토목과 지방토목
장 직무대리 기사 김점근
중구 토목과장직무대리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1977